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의 삭제 요청으로 손해배상금액 조정

A방송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리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3백만 원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신청인의 목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도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 가치상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로 인하여 확대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삭제 요청하면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기사로 인한 신청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댓글 게시판 삭제 조정

C신문은 국내 프로축구 모 구단의 팬클럽인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실점하여 패색이 짙어지자 경기를 관전하는 동안 상대팀 선수들 및 심판진에게 욕설을 했고, 신청인 단체 회원들의 욕설은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회원들이 경기를 관전하면서 욕설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국내 프로축구 응원문화 발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도 조정대상기사가 전제된 포털 사이트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 기자들 비롯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대상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 단체의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된 점을 인정하여 신청인 단체의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포털사이트에 댓글 게시판의 삭제를 요청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명백한 취재 거부 의사에도 몰래 촬영해 방송, 손해배상금 3백만원으로 조정성립

B방송은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주변인물을 인터뷰해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이웃이었던 신청인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부 전경은 그대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취재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며 방송 촬영하는 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경이 그대로 방영되어 지인들로부터 살인 사건과 관련한 충격적인 질문까지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경을 그대로 방송해 신청인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해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들 중 한 명이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을 취재진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 몰래 촬영해 방송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을 중단하고 신청인들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다.

일방적 제보에 따른 경찰관의 명예훼손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합의

D신문은 경찰관이 불법유치권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법유치권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한 후 해당 사건을 각 기소의견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을 기소의견 및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쟁점에 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게재되어 있으나 선정적인 제목 및 신청인의 비리를 확산하는 듯한 문구 등으로 인해 독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기사를 읽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신청인의 반론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으며, D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